

## 부속서 I

### 한국의 유보목록

####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4조(시장접근)

라. 제10.5조(현지주재)

마. 제9.9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9.13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조치**<sup>1</sup>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라.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

<sup>1</su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 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9.13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9.13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리고 제9.13조제1항다호 및 제10.6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한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5조(현지주재)에 대하여 행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2조(내국민 대우)와 제10.5조(현지주재)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10.5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10.2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1. 분야	건설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015호, 2016.2.3) 제9조 및 제10조</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9호, 2016.2.11) 제13조</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89호, 2016.2.12) 제2조 및 제3조</p> <p>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3589호, 2015.12.22) 제14조</p> <p>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3918호, 2016.1.27) 제4조 및 제5조</p> <p>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15호, 2016.1.19) 제2조(별표 1)</p> <p>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47호, 2016.1.27) 제2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b>2. 분야</b>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 대여, 정비, 수리, 판매 및 폐기 서비스
<b>관련의무</b>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p>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3784호, 2016.1.19) 제21조</p> <p>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p> <p>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32호, 2015.9.25)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p>
<b>유보내용</b>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 대여, 정비, 수리, 판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3. 분야	운송서비스 - 자동차 정비, 수리, 판매, 폐기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486호, 2015.8.11) 제20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84호, 2016.2.11) 제7조, 제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111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594호, 2015.2.2) 제16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 판매, 정비, 수리 및 폐기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각 경우에 맞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p>“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 교부 및 봉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4. 분야	유통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담배사업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p> <p>담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19호, 2013.4.26) 제4조 및 제5조</p> <p>담배사업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3.3) 제5조, 제7조 및 제7조의3</p> <p>주세법(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8조부터 제10조까지</p> <p>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9조</p> <p>주류 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21호, 2015.6.30)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63호, 2015.12.31)</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p>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p> <p>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가 되어야 한다.</p> <p>주류 도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p>

5. 분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3854호, 2016.1.27) 제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제5조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6호, 2016.9.22) 별표2
유보내용	<u>투자</u> 외국인은 1)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아니하며, 2) 육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지 아니한다.

6. 분야	사업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31호, 2016.12.2) 제1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12.30) 제1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한다.

7. 분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약사법(법률 제14926호, 2017.10.24) 제42조 및 제45조</p> <p>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제24479호, 2013.3.23) 제6조</p> <p>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11호, 2017.7.26) 제31조의2</p> <p>한약재 수급관리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10호, 2015.12.9) 제4조 및 제12조</p> <p>의료기기법(법률 제13698호, 2015.12.29) 제15조</p> <p>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181호, 2015.7.29) 제29조</p>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30호, 2015.5.18) 제6조</p>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350호, 2016.12.30) 제2조 및 제5조</p> <p>식품위생법(법률 제13201호, 2015.2.3) 제36조 및 제37조</p> <p>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36호 2016.1.22) 제23조 및 제24조</p> <p>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349호, 2016.1.4) 제36조(별표14)</p> <p>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4025호, 2016.2.3)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p> <p>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36호, 2016.1.22) 제21조 및 제22조</p> <p>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53호, 2016.2.4) 제29조(별표10)</p> <p>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3201호, 2015.2.3) 제14조 및 제15조</p> <p>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36호, 2016.1.22) 제2조</p> <p>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68호, 2016.3.31) 제15조</p> <p>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20호, 2016.2.3) 제6조</p> <p>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236호, 2015.12.31) 제2조</p>

	<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19호, 2016.2.3) 제6조 및 제6조의2</p> <p>화장품법(법률 제14027호, 2016.2.3) 제3조</p> <p>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182호, 2015.7.29) 제4조</p>
<p><b>유보내용</b></p>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도매업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li> <li>나. 의료기기, 또는</li> <li>다.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를 포함한다)</li> </ul> <p>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 판매 및 보존(냉장)</li> <li>나. 식품공급서비스</li> <li>다. 식품검사서비스</li> <li>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또는</li> <li>마. 화장품(기능성 화장품을 포함한다) 공급서비스</li> </ul> <p>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을 조절한다.</p> <p>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업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b>8. 분야</b>	의약품소매유통서비스
<b>관련의무</b>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12.29) 제20조 및 제21조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73호, 2016.12.13) 제22조의2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의약품소매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을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약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인은 1개의 약국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약국을 설립할 수 없다.

9.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철도사업법(법률 제13688호, 2015.12.29) 제5조, 제6조 및 제12조</p> <p>한국철도공사법(법률 제13692호, 2015.12.29) 제9조</p> <p>철도건설법(법률 제13490호, 2015.8.11) 제8조</p> <p>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3조, 제20조, 제26조 및 제38조</p> <p>한국철도시설공단법(법률 제12995호, 2015.1.6) 제7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명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한국 국적의 주주가 주식의 100퍼센트를 소유한 법인)만이 2005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 심사에 따른다.</p> <p>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를 포함한다)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b>10. 분야</b>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는 제외한다)
<b>관련의무</b>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3800호, 2016.1.19) 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09호, 2016.4.26)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4호, 2016.4.21) 제11조 궤도운송법(법률 제13476호, 2015.8.11) 제4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12.31) 제3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택시와 정기 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b>11. 분야</b>	운송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보조 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해운법(법률 제13186호, 2015.2.3) 제24조 및 제33조  해운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78호, 2015.12.31) 제16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  도선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6조  선박투자회사법(법률 제11756호, 2013.4.5) 제3조 및 제31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주식회사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 또한 한국에 주식회사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해운중개서비스, 해상대리서비스 및 선박유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명시된 회사이어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12.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항공법(법률 제14114호, 2016.3.29)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32조 및 제135조</p> <p>항공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8호, 2016.5.11) 제14조의2, 제278조, 제278조의3, 제296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p>
유보내용	<p><u>투자</u></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정기 또는 부정기 국내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한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외국 국민</li> <li>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li> <li>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li> <li>라. 가호부터 다호까지 언급된 인이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li> <li>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li> </ul> <p>항공기를 소유한 인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인은 해당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호부터 마호까지 열거된 인에게는 항공기의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p>

13.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사용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항공법(법률 제14114호, 2016.3.29) 제3조, 제6조 및 제134조  항공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8호, 2016.5.11) 제15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2
유보내용	<p><u>투자</u></p> <p>항공기사용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외국 국민</li> <li>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li> <li>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li> <li>라. 가호부터 다호까지 언급된 인이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li> <li>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li> </ul>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사용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재진압, 산림화재관리, 항공광고, 비행훈련, 항공지도제작, 항공조사, 항공살포, 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활동, 항공순찰,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채 및 관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p>

<b>14. 분야</b>	운송서비스 - 도로운송지원서비스
<b>관련의무</b>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3800호, 2016.1.19) 제36조 및 제3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4호, 2016.4.21) 제73조 도로교통법(법률 제13829호, 2016.1.27) 제3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65호, 2016.2.11) 제17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버스터미널운영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인 및 보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경우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및 군수의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분야	쿠리어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항공법(법률 제14114호, 2016.3.29) 제139조  항공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8호, 2016.5.11) 제30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3812호, 2016.1.19)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76호, 2016.1.7) 제6조, 제34조 및 제41조의2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 국제쿠리어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국내쿠리어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쿠리어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려는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16. 분야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3823호, 2016.1.27) 제6조, 제7조, 제8조, 제21조 및 제87조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5385호, 1997.8.28) 부칙 제4조  전파법(법률 제13012호, 2015.1.20) 제13조 및 제20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기간통신서비스 허가 또는 별정통신서비스를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부여된다.</p> <p>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를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는, 기간통신서비스 허가가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아니한다.</p> <p>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모두를 합하여 기간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의 경우,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그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의 경우, 한국은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다음을 허용한다.</p> <p>가. 의제외국인이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퍼센트까지 보유하는 것. 다만,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p> <p>나. 의제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퍼센트까지 보유한,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서비스 공급자가 기간통신서비스 허가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것</p> <p>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p> <p>외국인은 한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으로 공중통신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하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p> <p>가. <b>의제외국인</b>이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3823호, 2016.1.27) 제5조제 2항에 따라, <b>기간통신사업자</b>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이다.</p> <p>다.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3823호, 2016.1.27) 제5조제 3항에 따라, <b>별정통신사업자</b>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이다. 그리고</p> <p>라.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13586호, 2015.12.22) 제2조 제3호에 따라, <b>전송설비</b>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	---

<b>17. 분야</b>	부동산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b>관련의무</b>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p>공인중개사법(법률 제12374호, 2014.1.28) 제9조</p> <p>공인중개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92호, 2016.1.12) 제13조</p> <p>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73호, 2015.1.6) 제4조</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12018호, 2013.8.6) 제27조</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632호, 2015.11.11)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3호, 2016.4.21) 제25조 및 제26조</p>
<b>유보내용</b>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부동산중개서비스 또는 부동산감정평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b>18. 분야</b>	의료기기 관련 소매, 리스, 임대 및 수리 서비스
<b>관련의무</b>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의료기기법(법률 제13698호, 2015.12.29) 제16조 및 제17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181호, 2015.7.29) 제35조 및 제37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 리스, 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b>19. 분야</b>	대여서비스 - 자동차
<b>관련의무</b>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3800호, 2016.1.19) 제28조 및 제2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4호, 2016.4.21)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4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자동차대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b>20. 분야</b>	과학조사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해양과학조사법(법률 제12091호, 2013.8.13) 제6조, 제7조 및 제8조 영해 및 접속수역법(법률 제10524호, 2011.4.4) 제5조
<b>유보내용</b>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한국 국민 또는 한국 법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사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21. 분야	전문직서비스 - 법률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변호사법(법률 제12887호, 2014.12.30) 제4조, 제7조, 제21조, 제21조의2, 제34조, 제45조, 제58조의6 및 제58조의2  법무사법(법률 제12885호, 2014.12.30)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공증인법(법률 제11823호, 2013.5.28)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형태의 법적 실체를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 대한 투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p> <p>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해당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p> <p>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p>

22. 분야	전문직서비스 – 노무자문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3898호, 2016.1.27) 제5조, 제6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  공인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08호, 2016.4.26) 제15조 및 제19조의2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54호, 2016.4.26) 제6조 및 제10조의2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만이 공인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한국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b>23. 분야</b>	전문직서비스 - 변리사
<b>관련의무</b>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변리사법(법률 제11962호, 2013.7.30) 제3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
<b>유보내용</b>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변리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형태의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p> <p>변리사 1인은 오직 1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p>

24. 분야	전문직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공인회계사법(법률 제13444호, 2015.7.24) 제2조, 제7조, 제12조 및 제23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15호, 2014.5.28) 제3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p> <p>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한국 공인회계사만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25. 분야	전문직서비스 -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세무사법(법률 제14045호, 2016.3.2)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및 제20조  법인세법(법률 제13555호, 2015.12.15) 제60조  소득세법(법률 제13558호, 2015.12.15) 제70조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761호, 2009.8.24) 제20조 및 제22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p> <p>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b>26. 분야</b>	전문직서비스 – 통관서비스
<b>관련의무</b>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관세사법(법률 제14036호, 2016.3.2) 제3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8, 제17조의13, 제19조 및 제25조
<b>유보내용</b>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따라 통관업에 종사하도록 허가를 받은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27. 분야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서비스 - 산업안전, 보건기관 및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1862호, 2013.6.4) 제15조, 제16조, 및 제52조의4</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5호, 2016.2.17)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50호, 2016.2.17)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136조의8</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28. 분야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서비스 –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건축사법(법률 제13472호, 2015.8.11) 제23조</p> <p>건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5호, 2016.2.11) 제22조 및 제23조</p> <p>건축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85호, 2016.2.11) 제13조</p> <p>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제13852호, 2016.1.27) 제21조</p> <p>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제33조</p> <p>기술사법(법률 제13705호, 2016.1.6) 제6조</p> <p>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99호, 2016.1.19) 제9조</p> <p>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15호, 2016.4.29) 제11조</p> <p>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3671호, 2015.12.29) 제26조</p> <p>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76호, 2016.5.17) 제44조</p> <p>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12호, 2016.5.25) 제21조</p> <p>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76호, 2015.2.3) 제16조</p> <p>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015호, 2016.2.3) 제9조</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15호, 2016.4.29) 제9조</p>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26호, 2015.7.24) 제44조</p>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p> <p>온천법(법률 제13401호, 2015.7.20) 제7조</p> <p>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3918호, 2016.1.27) 제4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 건축 서비스, 또는 조사 및 지도 제작 서비스(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서비</p>

	<p>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한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	--

<b>29. 분야</b>	사업서비스 – 전광판방송서비스 및 옥외광고서비스
<b>관련의무</b>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방송법(법률 제13341호, 2015.6.22) 제13조 및 제7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26호, 2016.1.6) 제1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52호, 2015.12.31) 제14조 및 제44조
<b>유보내용</b>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 국민 또는 외국 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전광판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 방송 프로그램의 최소 20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b>30. 분야</b>	사업서비스 – 직업알선서비스, 인력공급 및 근로자파견 서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p>직업안정법(법률 제13049호, 2015.1.20) 제19조 및 제33조</p> <p>직업안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23호, 2016.5.3) 제21조 및 제33조</p> <p>직업안정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58호, 2016.6.16) 제17조, 제18조 및 제36조</p> <p>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70호, 2014.3.18)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p> <p>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810호, 2015.12.30) 제2조 및 제3조</p> <p>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41호, 2015.12.30) 제3조 및 제5조</p>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837호, 2016.1.27) 제17조</p> <p>선원법(법률 제11024호, 2011.8.4) 제106조,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42조 및 제143조</p> <p>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법률 제13272호, 2015.3.27) 제5조</p>
<b>유보내용</b>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파견서비스(임시 파견)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투명성 목적상, 2013년 10월 29일 현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32개 사업으로 한정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대상 사업 유형을 확대하고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관리사업자 및 「선원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해상업무 및 어업 관련 조직이나 기관만이 선원인력공급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선원관리사업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한국 「상법」에 명시된 회사이어야 한다.</p> <p>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p>

<b>31. 분야</b>	조사 및 경비 서비스
<b>관련의무</b>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경비업법(법률 제13814호, 2016.1.26) 제3조 및 제4조  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595호, 2015.10.20) 제3조 및 제4조  경비업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6호, 2015.9.24) 제3조
<b>유보내용</b>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의 5가지 유형의 경비서비스만이 허용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설경비</li> <li>나. 호송경비</li> <li>다. 신분보호</li> <li>라. 기계경비, 그리고</li> <li>마. 특수경비</li> </ul>

<b>32. 분야</b>	간행물 관련 유통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10.2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3308호, 2015.5.18)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23호, 2016.1.22) 제12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2호, 2016.1.22) 제7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내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은 필요 시 심의의 대상이 된다.

<b>33. 분야</b>	운송서비스 –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
<b>관련의무</b>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항공법(법률 제 14114호, 2016.3.29)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  항공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8호, 2016.5.11) 제16조, 제304조 및 제305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sup>2</sup>

<sup>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에 설치한 사무소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위치한 한국 항공기에 유지 및 보수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4. 분야	교육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고등교육법(법률 제14148호, 2016.5.29) 제3조, 제4조, 제32조, 제42조 및 제43조</p> <p>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83호, 2015.11.30) 제28조</p> <p>사립학교법(법률 제14154호, 2016.5.29)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1조</p> <p>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65호, 2013.7.22) 제9조의3</p> <p>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제1조 및 제2조</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50퍼센트 이상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이 출연하는 경우, 그 교육기관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재산”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p> <p>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부속서 II의 한국 유보목록에 열거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p> <p>교육부장관은 의학·약학·수의학·한의학·의료기사 분야 및 유아·초등·중등 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그리고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p> <p>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중앙정부만이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p>

35. 분야	교육서비스 –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2016.1.19) 제2조, 제2조의2 및 제13조</p> <p>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12조</p> <p>평생교육법(법률 제14160호, 2016.5.29)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p> <p>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3854호, 2016.1.27) 제4조</p> <p>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6호, 2016.9.22) 별표1</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형은 다음으로 한정한다.</p> <p>가.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 그리고</p> <p>나.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이외의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li> <li>2) 지식 및 인력의 개발과 관련된 교육시설, 그리고</li> <li>3)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이면서 성인 대상으로 설립된 것</li> </ol>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최소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이어야 하며, 한국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p>

<b>36. 분야</b>	교육서비스 – 직업능력개발훈련서비스
<b>관련의무</b>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p>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3042호, 2015.1.20) 제28조, 제32조 및 제36조</p> <p>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10호, 2015.12.30) 제24조 및 제26조</p> <p>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41호, 2015.12.30)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p>
<b>유보내용</b>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직업능력개발훈련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37. 분야	수의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수의사법(법률 제13028호, 2015.1.20) 제4조, 제17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민법(법률 제13125호, 2015.2.3) 제3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동물진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사무소를 한국 내에 설치한,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인만이 수의 또는 수생 동물 질병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b>38. 분야</b>	환경서비스 - 폐수처리서비스, 폐기물관리서비스, 대기오염처리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서비스
<b>관련의무</b>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79호, 2016.1.27) 제62조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3411호, 2015.7.20)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47호, 2015.7.24)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3874호, 2016.1.27) 제6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 제13892호, 2016.1.27) 제15조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3426호, 2015.7.24) 제54조 토양환경보전법(법률 제13534호, 2015.12.1) 제23조의7 지하수법(법률 제13383호, 2015.6.22) 제29조의2 유해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3035호, 2015.1.20) 제28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분야란에 열거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b>39. 분야</b>	공연서비스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10.2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공연법(법률 제13298호, 2015.5.18) 제6조 및 제7조 공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70호, 2016.5.17) 제4조 및 제6조 공연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94호, 2011.12.25) 제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799호, 2013.10.10) 별표5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초청하여 한국 내에서 공연하도록 하려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0. 분야	뉴스통신사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16조 및 제28조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183호, 2012.11.20) 제4조 및 제10조  전파법(법률 제11712호, 2013.3.23) 제20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사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외국 정부</li> <li>나. 외국인</li> <li>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li> <li>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li> </ul>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고, 또한 연합뉴스사나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외국 국민, 또는</li> <li>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한국 국민</li> </ul> <p>외국 뉴스통신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지국의 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외국 국민</li><li>나.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li><li>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li></ul>
--	---

41.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12.29)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94호, 2015.9.25)
유보내용	<u>투자</u> 혈액제제 제조자는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액물질을 조달하여야 한다.

42. 분야	정기 간행물의 발행(신문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20조 및 제29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li> <li>나. 한국 국민이 아닌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li> <li>다. 외국인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li> </ul> <p>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한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편집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한국 내에서 원어로 인쇄 및 배포할 수 있다.</p>

43.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양곡관리법(법률 제12964호, 2015.1.6) 제12조</p> <p>축산법(법률 제14481호, 2016.12.27) 제30조 및 제34조</p> <p>종자산업법(법률 제13385호, 2015.6.22) 제42조</p> <p>사료관리법(법률 제14481호, 2016.12.27) 제6조</p> <p>인삼산업법(법률 제13360호, 2015.6.22) 제20조</p> <p>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3854호, 2016.1.27) 제4조</p> <p>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제5조</p> <p>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6호, 2016.9.22) 별표2</p> <p>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90호, 2016.12.2) 제15조, 제17조 및 제43조</p> <p>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68호, 2016.12.21)</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p> <p>「농업협동조합법」상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 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p> <p>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p> <p>「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2조(내국민 대우) 및 제10.4조(시장접근)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 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p>

44. 분야	에너지 산업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sup>3</sup>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30호, 2016.3.29) 제168조</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037호, 2016.3.11) 제187조</p> <p>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3854호, 2016.1.27) 제4조</p> <p>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제5조</p> <p>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2호, 2015.7.13) 별표2</p> <p>공공적 법인의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17호, 2000.9.28)</p> <p>증권업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7-3호, 2007.1.19) 제7-6조</p>
유보내용	<p><u>투자</u></p> <p>한국전력공사 발행주식의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p> <p>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p>

<sup>3</sup> 부속서 II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5. 분야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sup>4</sup>
정부수준	중앙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30호, 2016.3.29) 제168조 한국가스공사정관(2015.6.23) 제11조
유보내용	<u>투자</u>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sup>4</sup> 부속서 II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6. 분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상영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02호, 2013.7.16) 제2조, 제27조 및 제4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 제19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 내 영화 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